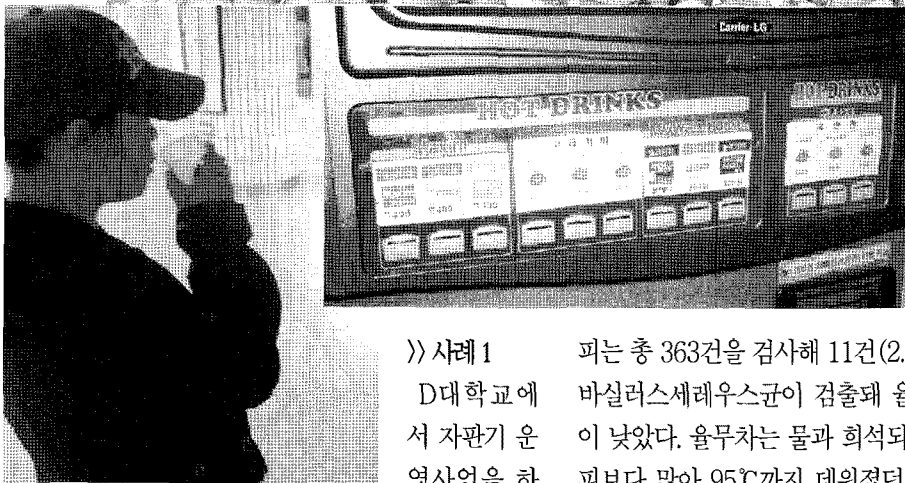


#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강제 판매,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 협회, 다류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 개정 건의



다. 울무차는 총 30건 중 14건 (47%)에서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반면 뜨거운 커피

### >> 사례 1

D대학교에서 자판기 운영사업을 하는 김모씨. 그가 설치 운영하는 커피자판기에 있어 국내산 차 판매 칼럼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학생들이 국내산 차를 넣어도 거의 뽑아 마시지 않다보니 회전율이 오래된 재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씨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국내산 차 3칼럼 중 한 칼럼에는 코코아를 팔고, 나머지 2칼럼을 놀리고 있다.

피는 총 363건을 검사해 11건(2.8%)에서 일반세균과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돼 울무차에 비해 검출률이 낮았다. 울무차는 물과 희석되는 원재료의 양이 커피보다 많아 95℃까지 데워졌던 원수 온도가 온커피보다 빨리 식어 오염됐던 원재료에서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 >> 사례 3

커피자판기 제조업체 R사는 얼마전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모 지역에 설치된 커피자판기가 식품위생법 영업 규정을 왜 지키지 않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이유인 즉, 해당 커피자판기가 국내산 차 판매 칼럼이 식품위생법상 판매 의무인 1/3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이 공무원은 12칼럼의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 판매 칼럼이 3개 밖에 없어 1/3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판매되는 다류의 종류 중 국내산 차의 판매 비율을 1/3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칼럼 중에 국내산 차 판매 칼럼이 1/3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 >> 사례 2

서울시가 2009년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시중 커피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는데 국내산 차 관련한 유의적인 결과하나가 나타났다. 시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온커피, 울무차, 냉커피, 코코아, 유자차, 생강차 등 판매제품 454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4건(7.5%)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중 국내산 차 칼럼의 울무차가 특히 위생 문제에 취약했

위의 3가지 사례는 현행 다류식품자동판매기의 국내

산 차 의무 판매 규정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국내산 차 판매는 제조자도 운영자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소비자를 위하는 것도 아닌데 식품위생법상에 굳건히 의무규정으로 묶여 있다. 입법의 긍정성 보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게 이 의무규정이다. 이 규정이 만들어 진지는 이미 20여년이 지났다. 당시는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을 것이다. 아마 커피가 몸에 해로우니 건강에 좋은 국내산 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 유해성을 희석시키던가, 또 국내원료로 하는 국내산 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아니었을까? 그런데 누구도 명백한 이유를 모른다. 하도 오래전 입법이다 보니 정부 관원부처에서도 명백한 규제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업계에도 그저 규정되었으니 마지못해 지킨다는 식이다.

실사 위의 2가지 논리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시대는 변했다. 국민건강을 위해 커피자판기라는 단일 품목에 국내산 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라는 법은 '난센스'이다. 본연의 상품가치로 평가 받아야하는 커피자판기라는 단일 품목에 왜 사족을 만들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가. 우리나라이외의 어떤 나라에서도 커피자판기에 커피이외의 다른 음료를 넣어서 판매하라는 규정은 없다. 커피자판기는 그저 커피자판기일 뿐이다. 왜 커피자판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커피·국내산 차 복합 다류자판기를 만들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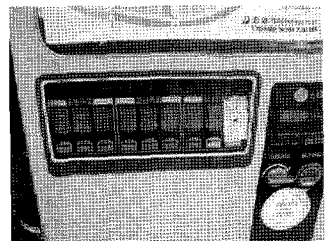
국내산 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도 명분이 상실된 시대이다. 과거에는 국내산 차에 있어 국내산 원료의 비율이 높았을지는 몰라도 최근은 거의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원료로는 자판기용으로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유통되는 국내산 차의 대부분은 수입산 원료로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현재의 국내산 차 판매 의무규정은 명분없는 규제이다. 도대체 규제의 이유가 모호하다. 국내산 차를 팔지 말지에 대해서는 산업계 자율에 맡기면 될 일이다. 설령 국내산 차 판매 의무규정을 폐지한다고 해도 국내산 차의 판매가 일거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자율 시장 논리

에 의해 필요한 사람은 국내산 차 판매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기 마련이다. 시장은 어차피 소비자와 운영자의 니즈에 의해 흘러간다.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가는 이 명분 없는 규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뚜렷한 규제의 이유 없이 자율적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가 이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협회는 2009년 11월 초순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류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 개정 건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현재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해야 함으로 인해 자판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규정으로 인해 커피자판기 운영자들은 국내산 차 판매를 원하지 않으면서 구색을 맞춰 할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영업의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커피보다 위생문제에 더욱 민감한 국내산차는 식약청이나 지자체의 위생점검시 위생불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커피자판기에 대한 위생불신을 가중시키는데 있어서도 한몫을 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현행 국내산 차 의무 채택 규정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업계의 자율적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제 이 의무를 풀어 국내산 차의 채택은 순수하게 제조업체와 운영자의 니즈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협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에 제출한 「다류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 개정 건의안」의 전문을 살펴보자.



## 다류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 개정건의

### 1. 관련 법률

[별표 9] <개정 2009.4.3>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 나. 업종별 시설기준

#####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 2. 현황

- 현재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 인해 자판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의무규정으로 인해 커피자판기 운영자들은 국내산 차 판매를 원하지 않으면서 구색을 맞춰 할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영업의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더욱이 커피보다 위생문제에 더욱 민감한 국내산 차는 식약청이나 지자체의 위생점검시 위생불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이 커피자판기에 대한 위생불신을 가중시키는데 있어서도 한몫을 하고 있음.

### 3. 문제점 및 개정 당위성

- 단일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 1/3을 의무적으로 적용 판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판기 산업계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 일반 전기 전자 제품이나 영업용기기는 그 제품에서 제공되는 핵심 콘텐츠가 무엇이나에 따라 상품의 가치와 경쟁력이 좌우됨. 따라서 그 해당 내용상품이 유통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품의 성격이나 특징은 시장 경쟁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게 마련.
- 영업용기기인 커피자동판매기에 국내산 차를 1/3을 무조건 적용하려는 규정은 커피자판기의 단일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제품 컨셉을 모호하게 만드는 폐단을 초래(\*단일 커피자판기가 커피·국

내산 차 복합형 자판기가 돼버림.)

- 유사품목으로 커피자판기와 같은 영업용기기로 활용되는 업소용 커피머신, 미니 커피자판기(\*식당에 설치된 소형 제품)의 경우는 국내산 차 위무 판매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의 형평성 차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

□ 국내산 차가 커피보다 위생문제에 취약

- 국내산 차는 대개 물과 희석되는 원재료의 양이 커피보다 많아 95℃까지 데워졌던 원수 온도가 온커피보다 빨리 식어 오염됐던 원재료에서 세균이 검출될 확률이 높음.
- 지난 8월 19일부터 서울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시중 커피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남.

### 관련 언론 보도자료

서울 시내 길거리 자동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냉커피와 울무차에서 세균과 대장균 등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시중 커피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온커피, 울무차, 냉커피, 코코아, 유자차, 생강차 등 판매제품 454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4건(7.5%)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울무차는 총 30건 중 14건(47%)에서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고, 냉커피도 총 20건 가운데 9건(45%)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다량 검출됐다. 뜨거운 커피는 총 363건을 검사해 11건(2.8%)에서 일반세균과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돼 울무차나 냉커피에 비해 검출율이 낮았다. 울무차는 물과 희석되는 원재료의 양이 커피보다 많아 95℃까지 데워졌던 원수 온도가 온커피보다 빨리 식어 오염됐던 원재료에서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국내산 차가 커피자판기보다 위생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생검사시마다 잦은 지적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커피자판기 전체 위생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국내산 차 시장의 보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가 없음.

- 만약 다류 내용물의 원료에 대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국내산 차 판매 규정이 의무화되었다면 이는 입법이 되었을 시점인 과거에나 일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국내산 차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최근 실정에서는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최근 커피나 국내산 차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국내산 차는 중국 등 외국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을 대상으로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보호 측면의 효과도 없음.

- 관련 규정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 작동기능이 2분의 1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학교에 설치되는 커피자판기에 있어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현실에서는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커피자판기가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음. 중·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커피자판기는 교무실내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커피자판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음.

- 따라서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이 국내산 차 의무규정이 만들어졌다면 현실에는 맞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임으로 마땅히 개선이 되어야 함.

□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

- 컬럼별 내용상품 판매에 있어 특정상품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사례. 커피자판기는 단지 커피자판기로서의 기능과 특성만 갖추면 됨.

□ 자판기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가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

- 자판기 제조업체는 운영자나 원하지도 않는 국내산 차 판매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에 따라 자판기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비싼 자판기 가격대가 형성이 되게 됨.

- 비싼 자판기 가격은 그 부담이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큰 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자판기 시장은 큰 시장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커피자판기의 기능과 용량을 줄인 중형자판기의 시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려는 시점인 바, 이들 자판기에도 현행대로 국내산 차 취급이 의무화된다면 제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힘들.

4. 개선 방향

**“커피자판기는 그냥 커피자판기이어야 합니다. 왜 운영자나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나요?”**

□ 커피자판기의 고유의 상품가치를 인정해 국내산 차 판매 의무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현행 국내산 차 의무 채택 규정은 그 명분과 실효성에 있어 효력을 상실하고, 업계의 자율적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제는 단일 커피자판기를 인정해 제품 본연의 가치로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함.
- 국내산 차의 채택은 순수하게 제조업체와 운영자의 니즈에 의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 방안.

▶ 법령개정방안 예시

| 기    존  | 개    정    |
|---|-----------|
|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br>나. 업종별 시설기준<br>(6) 식품자동판매기영업<br>(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라) 항목 삭제 |

## < 추가 보완 자료 >

### 1.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 삭제시 기대효과

#### ▶ 자판기 제조업체

- 불필요한 국내산 차 칼럼을 줄여 콤팩트한 커피자판기를 생산할 수 있음에 따라 제품 경쟁력 제고.
- 국내산 차 적용 칼럼과 재료통을 줄이면 대당 20~30만원의 원가 절감 가능.
- 커피자판기라는 단일 상품에 국내산 차를 판매하는 어정쩡한 제품 컨셉을 개선함으로써 제품 소구 효과 증진.

#### ▶ 운영업체

- 국내산 차의 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칼럼운영과 운영 효율성 제고가 가능.
-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고 칼럼을 놀리는 비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음.
- 위생문제에 취약한 울무차 등의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더 위생적인 음료를 제공하는 효과도 큼.

#### ▶ 소비자

- 국내산 차가 대부분 설탕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 커피보다 취약함. 더욱이 국내산차는 재료를 많이 써야하는 문제로 인해 음용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위생문제에 있어서도 커피보다 취약함.
- 잘나가지도 않는 국내산차 내용물을 억지로 채우게 되면 재료 회전율이 높지 않아서 오래 되어서 변질 우려도 있음.

☞ 국내산차를 판매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에 더 큰 도움을 줌

### 2. 운영업체의 경우 전체 다류판매 매출에서 국내산 차가 차지하는 비중

- 전체 매출의 5%선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짐
  -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이 주력 회원사의 국내산차 매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전체 다류 판매 매출에서 5%의 비중을 나타냄.
  - 이 비율을 국내산 판매칼럼이 보통 3개임을 고려할 때 운영효율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음.
  - 국내산 차 매출을 점점 줄어두고 있어 칼럼을 놀리거나, 국내산 차 칼럼에 코코아나 믹스 커피를 파는 일도 비일비재.

### 3. 커피자판기 모델별 국내산차 판매 칼럼 설치 비율

- 국내 대형 커피자판기는 로벤, 롯데기공 2군데 업체가 생산 공급하고 있음

#### ▶ 로벤

(모델명- 국내산차 판매 칼럼/전체 판매 칼럼)

CVK-6713HTB(600잔급) : 3개/12개

CVK-6024FB : 2개/12개

RVK-6107HB : 4개/10개

CVKC-3011CHB(300잔급) : 2개/7개

CVKC-5226CB : 2개/6개

RKC-5016B : 3개/8개

#### ▶ 롯데기공

LVM-6112KB(600잔급 용량) : 4개/12개

\* 기계 내부에 7EA의 재료통이 있으며 커피관련 재료통은 4EA, 국내산 차 관련 재료통은 3EA임.

LVM-3110NB(300잔급 용량) : 2개/8개

\* 재료통은 4~5EA 운영되며 국내산 차는 1EA 또는 2EA임.